



감정평가서 전자서명(원본) 증명서

《기본 정보》

감정서번호	251013-20-0002.
평가금액	29,745,000 원
평가기관 / 평가자	대한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 / 장지영
서명해쉬 페이지수	총 24 페이지

《서명자 정보》

구분	소속 / 성명	서명해쉬(일부)	서명시간
담당평가사	대한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 / 장지영	eyJhbGciOiJFUzI1Nils	2025-10-23 15:50:00.0
대표	대한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 / 오세영	eyJhbGciOiJFUzI1Nils	2025-10-23 15:50:00.0
심사자	대한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 / 김상철	eyJhbGciOiJFUzI1Nils	2025-10-23 15:53:00.0

본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원본 감정평가서임을 확인합니다.

본 문서는 [전자서명법 제3조 2항]에 의거 우리 협회가 운영하는 감정평가서 전자서명 시스템으로 생성된 원본 감정평가서로, 문서의 무결성을 증명하며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본 문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산30-5 (2025-12089-A01)
의뢰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감정평가서 번호	대한 제251013-20-0002호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 전재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대한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만대로 200-7, 3층
TEL : (033)731-2800 FAX : (033)731-2808

(토지)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장지영

장지영

(인)

(주)대한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장 오세영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이천구백칠십사만오천원정 (₩29,745,000.-)				
의뢰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감정평가목적	공매		
채무자	-	제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		
소유자 (대상업체명)	(주)대연이앤에이(해산간주)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5.10.22	2025.10.22	2025.10.23	

감정평가 내용	공부(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m²) 또는 수량	종류	면적(m²) 또는 수량	단가(원/m²)	금액(원)
	토지	$1,653 \times \frac{661}{1,653}$	토지	661	45,000	29,745,000
		이	하	여	백	
	합계				₩29,745,00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감정평가사

김상진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소재 '태백시청'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임야)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의뢰한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2. 대상물건의 개요

* 토지

대상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지분)	용도 지역	이용 상황	도로 조건	형상 지세	2025년 개별공시지가 (원/㎡)
1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산30-5	임야	1,653 (661)	1종일주	자연림	맹지	부정형 급경사	22,400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기간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에 의거하여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10월 22일입니다.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본건 평가대상 물건에 대하여 2025년 10월 22일에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지조사 시 대상물건의 존재 여부, 대상물건의 공부 및 의뢰된 목록과 현황과의 부합 여부, 대상물건의 특성,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권리관계의 확인 및 기타 대상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등

가.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나. 감정평가의 조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기타 검토 및 참고 사항

가. 대상물건은 공유지분으로서, 의뢰부분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곤란하므로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하되, 그 면적은 소유지분 비율에 의거 하였습니다.

나. 대상물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경제적가치희박한 활잡목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평가 하였으며, '분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곤란하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하여 육안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분묘' 소재 가능성 있는바 경매진행시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분묘' 소재 여부 등을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상물건은 인접필지와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한바 필요에 따라 경계측량 요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감정평가의 근거 및 적용

1. 감정평가의 근거

가. 근거 법령

본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련 제 법령에 근거하였습니다.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11조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 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제14조

[토지의 감정평가]

-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2. 대상물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가. 토지의 감정평가

토지는 시장자료가 풍부하여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비교방식으로 감정평가하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제12조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였으며, 또 다른 비교방식인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주된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공시지가기준법이란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입니다.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입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Ⅲ.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토지 감정평가에 참고한 가격자료

가. 대상물건 거래사례

최근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인근지역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용도 지역	지목	면적(㎡)		거래 시점	거래금액 (원)	토지단가 (원/㎡)
				토지	건물			
a	황지동 ***-**-****	2종일주	임야	328	-	2023. 03.30	30,000,000 (토지만)	약 91,000
	<토지단가 산출개요> · 토지추정단가 : 30,000,000원/328㎡ ≒ 91,000원/㎡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대상물건 평가사례

최근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인근지역 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용도 지역	지목	면적 (㎡)	평가 목적	기준시점	토지단가 (원/㎡)
㉠	황지동 산***-**-****	1종일주	임야	6,611	경매	2020.08.21	60,000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센터]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마. 인근지역 유사부동산의 가치수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가수준(원/㎡)	비고
주거지역	자연림	40,000원/㎡ ~ 60,000원/㎡ 수준임	-

2.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가장 비슷한 아래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되, 본건이 비교표준지로서 이를 기준하였습니다.

기호	소재지	면적(㎡)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조건	형상지세	공시지가(원/㎡)	대상토지
A	황지동 산30-5	1,653	임야	자연림	1종일주	맹지	부정형 급경사	22,400	1

[공시기준일 : 2025.01.01]

나. 시점수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치를 산정하되, 기준시점까지 조사·발표되지 않은 기간의 지가변동률은 조사·발표된 월별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대상토지	비교표준지	지역 및 용도지역 (산정기간)	지가변동률	지가변동률 산정
1	A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주거지역) (2025.01.01~2025.10.22)	0.624% (1.00624)	$(1+0.00568) \times (1+0.00033 \times 52/31) \approx 1.00624$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지역요인 비교

비교표준지가 대상토지로서 지역요인은 동일합니다.(1.00)

라. 개별요인 비교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의 개별요인을 각각의 조건에 따른 항목(세항목)으로 분류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임야지대[본건기호: 1 / 표준지: A]

조 건	항 목	세 항 목	비교치	검토의견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인근역과의 접근성,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1.00	본건이 비교표준지로서 동일함.
자연 조건	일조 등, 지세, 방위 등, 토양, 토질	일조, 통풍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의 양부	1.00	본건이 비교표준지로서 동일함.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1.00	본건이 비교표준지로서 동일함.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본건이 비교표준지로서 동일함.
격 차 율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 및 대법원 판례[2003다38207판결(2004.05.14 선고), 2002두5054판결(2003.07.25.선고)] 취지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나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하였습니다.

2) 그 밖의 요인 보정 산식

사례 기준 표준지 단가(사례 토지단가×사정보정×시점수정×지역요인 비교×개별요인 비교)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시점수정된 표준지 단가(표준지공시지가×시점수정)	

3)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가) 비교사례의 선정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지리적 접근성, 가치형성요인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상기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중 아래의 비교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비교 사례	사례 구분	소재지	용도 지역	지목	면적 (㎡)	기준시점	토지단가 (원/㎡)	적용
㉠	경매	황지동 산***	1종일주	임야	6,611	2020.08.21	60,000	표준지 A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격차율 산정

구분		사례단가(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격차 율	비고
		공시지가(원/㎡)							
산정 단가	평가사례 ㉠	60,000	-	1.05006	1.00	0.720	45,363	2.012	-
	표준지 A	22,400	-	1.00624	-	-	22,540		
산출 내역	사정보정	- 해당사항없음.							
	시점수정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주거지역)				(2020.08.21~2025.10.22)			
	지역요인	- 비교사례는 비교표준지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개별요인	접근조건	자연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0.80	0.90		1.00		1.00	0.720	
		-비교표준지는 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자연조건(지세 등)에서 열세함.							

다)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위에서 산정한 격차율 및 인근지역의 거래사례, 평가사례 및 유사부동산의 가치수준, 대상부동산의 감정 평가 목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비교 표준지	비교사례	그 밖의 요인 보정치
A	㉠	2.0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대상 토지	비교 표준지	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A	22,400	1.00624	1.00	1.000	2.01	45,305	45,000

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대상토지	토지단가(원/㎡)	면적(㎡)	시산가액	비고
1	45,000	661	29,745,000	주식회사 대연이앤에이 지분
합 계		661	29,745,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비교사례 선정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지리적 접근성, 가치형성요인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상기 거래사례 중 아래와 같이 비교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비교 사례	소재지	용도 지역	지목	면적 (㎡)	거래시점	토지단가 (원/㎡)	대상 토지
a	황지동 ***-**-**	2종일주	임야	328	2023.03.30	91,000	1

나. 사정보정

인근지역의 정상적인 가치수준 대비 적정하게 거래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1.00)

다. 시점수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비교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거래시점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치를 산정하되, 기준시점까지 조사·발표되지 않은 기간의 지가변동률은 조사·발표된 월별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대상 토지	비교 사례	지역 및 용도지역 (산정기간)	지가변동률	지가변동률 산정
1	a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주거지역) (2023.03.30~2025.10.22)	1.380% (1.01380)	$(1-0.00033 \times 2/31) \times (1+0.00035) \times (1-0.00008) \times (1-0.00004) \times (1-0.00006) \times (1+0.00005) \times (1+0.00001) \times (1+0.00154) \times (1-0.00015) \times (1-0.00072) \times (1+0.00663) \times (1+0.00568) \times (1+0.00033 \times 52/31) \div 1.0138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라. 지역요인 비교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여 동일한 가치형성요인을 지니므로 지역요인은 동일합니다. (1.00)

마. 개별요인 비교

비교사례와 대상토지의 개별요인을 각각의 조건에 따른 항목(세항목)으로 분류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임야지대[본건기호: 1 / 사례기호: a]

조 건	항 목	세 항 목	비교치	검토의견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인근역과의 접근성,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0.70	교통의 편부 등에서 열세함.
자연 조건	일조 등, 지세, 방위 등, 토양, 토질	일조, 통풍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의 양부	0.75	지세(면적 등) 등에서 열세함.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0.95	용도지역에서 열세함.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대체로 유사함.
격 차 율			0.499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대상 토지	비교 사례	비교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a	91,000	1.00	1.01380	1.00	0.499	46,036	46,000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대상토지	토지단가(원/㎡)	면적(㎡)	시산가액	비고
1	46,000	661	30,406,000	주식회사 대연이앤에이 지분
합 계		661	30,406,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Ⅳ.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1. 시산가액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할 때 합리성이 대체로 인정되며,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및 장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상토지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감정평가액(원)
1	29,745,000	30,406,000	29,745,000
합 계	29,745,000	30,406,000	29,745,000

2. 감정평가액 결정

구 분	감정평가액(원)	비고
토 지	29,745,000	상세내역은 후첨 “감정평가명세표” 참조
총 액	29,745,000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기준시점 : 2025-10-22>

Page : 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m²)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강원 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산30-5	임야	제1종 일반주거지역	661 1,653x---- 1,653	661.00	45,000	29,745,000	주식회사 대연이앤에이 지분
합 계								₩29,745,000.-	
				이	하	여	백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황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사항 등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 참고사항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소재 '태백시청'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 주변 미성숙 주거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 부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나,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볼 때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다소 불편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황

남동향 급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맹지입니다.

5. 토지이용계획사항 등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개발촉진지구(2008-12-19)<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배수구역<하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황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사항 등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 참고사항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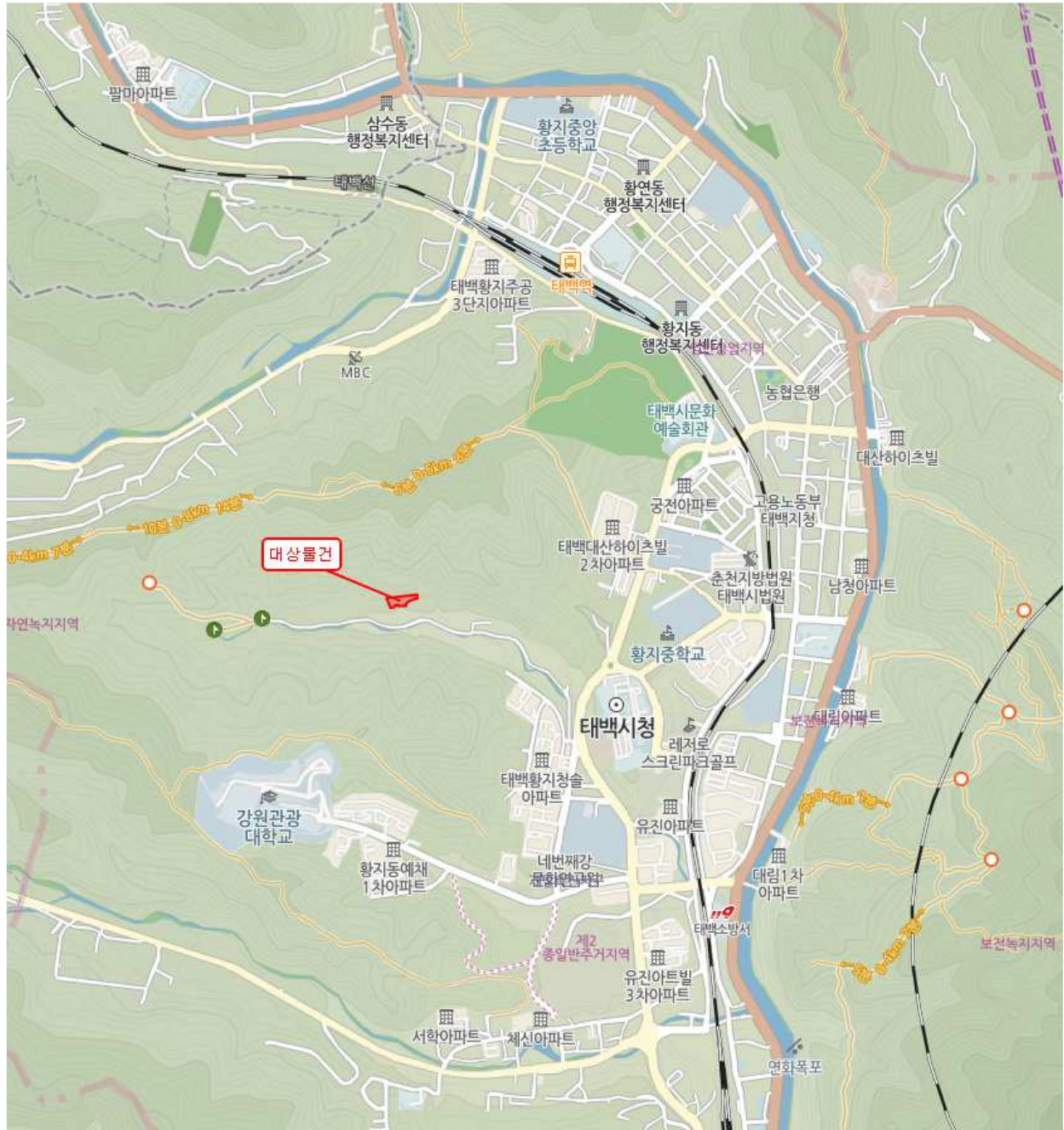
8. 기타 참고사항

상기 '1. 감정평가의 개요, 5. 기타검토 및 참고사항'참조.

광역 위치도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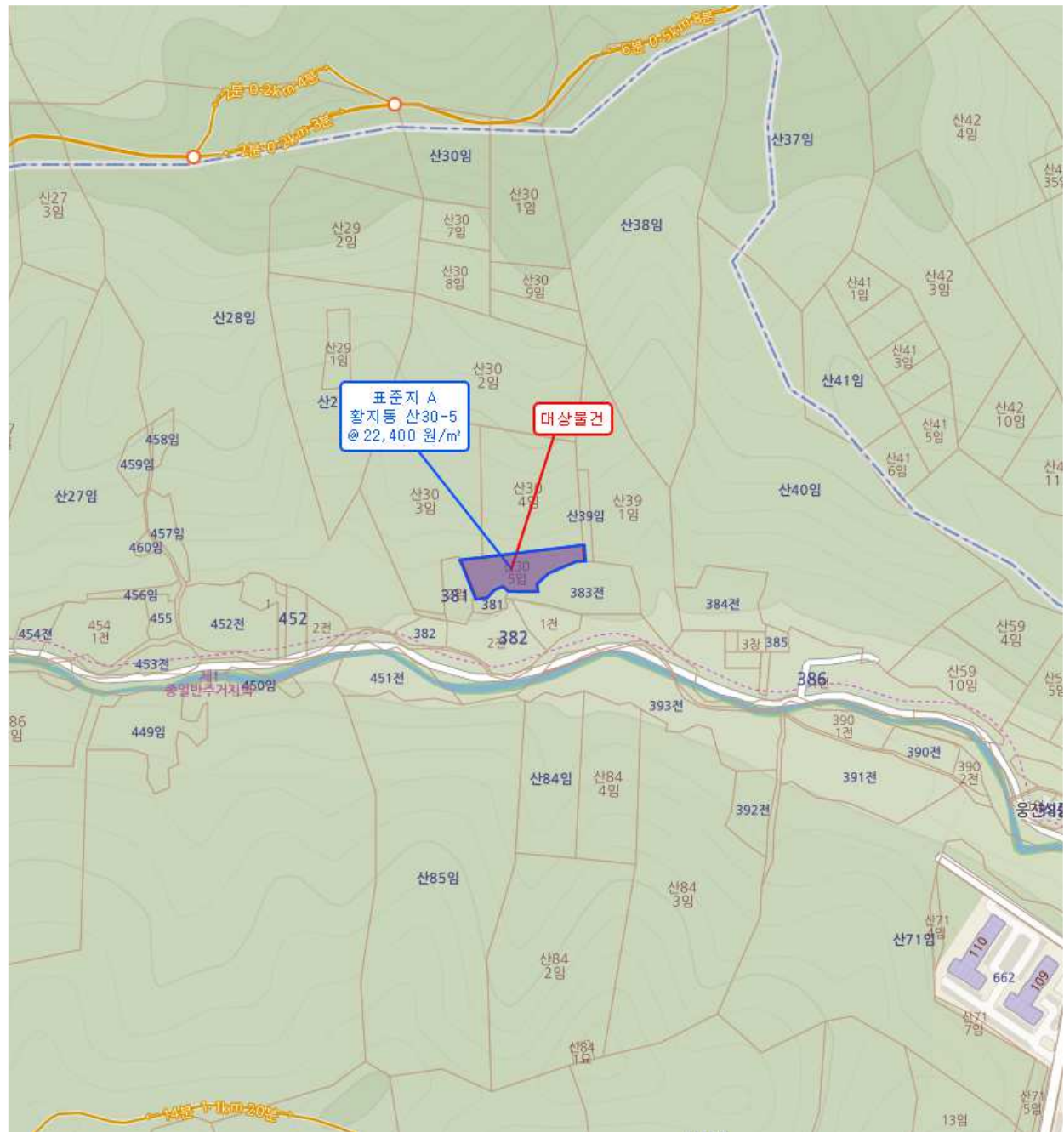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산30-5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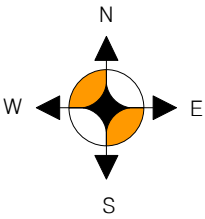
상세 위치도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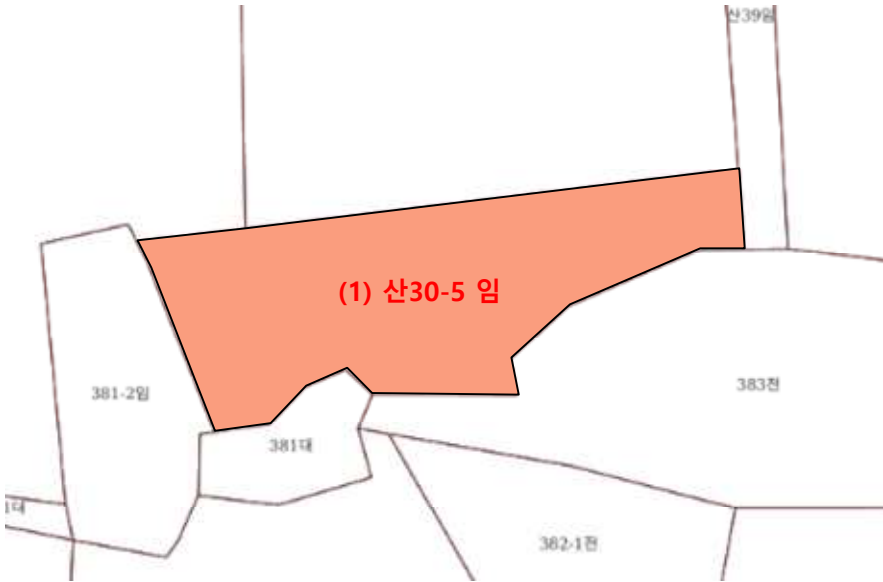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산30-5번지



지 적 개 황 도



None Scale



범 례

평가대상토지
현황도로
계획도로선

용도지역구분선
평가건물1층
평가건물2층

평가건물3층이상
감정평가외건물
제시외건물(종물 및 부합물)

사진 용지



기호 1



기호 1